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계열사 및 제 3자 위탁 포함-

2016.02.

목 차

제 1 조 목 적.....	1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제 3 조 적용범위.....	2
제 4 조 위탁 또는 수탁대상 업무의 범위	2
제 5 조 업무위수탁시 검토사항	4
제 6 조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	5
제 7 조 위수탁 계약의 결정, 해지 및 재위탁.....	6
제 8 조 보고의무	7
제 9 조 위탁업무의 모니터링	9
제 10 조 고객정보의 보호.....	10
제 11 조 비상계획	12
제 12 조 접근권 및 검사권 확보	12
제 13 조 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	12
제 14 조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14
제 15 조 업무위수탁기준의 제정 및 개정	14
제 16 조 관련규정의 준용.....	15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취급하는 업무를 제 3 자(당 행 본점 및 다른 지점은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 3 자로 본다)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제 3 자로부터 수탁하는 경우와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2.1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 3 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본점, 다른 지점 또는 계열사간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이 기준에 의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으로 간주된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 계약은 제외한다. 단,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 3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2.2 “수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제 3 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3 “계열사”라 함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주식보유 등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상법상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출자관계로 연결된 경우를 말한다(다만, 상장된 회사의 경우 소유지분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2.4 “정보처리”라 함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5 “전산사고”라 함은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업무의 중단 또는 지연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2.6 “금융거래정보”라 함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객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금융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해당 고객의 정보 및 금융거래행위의 결과로 생성된 고객의 거래내역 정보를 의미한다
- 2.7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범위

- 3.1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업무의 위수탁(이하 “업무위수탁”이라 함)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의 업무위탁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3.2 본점에 위탁 또는 본점으로부터 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절차 및 서류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 3.3 이 기준은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의 경우에는 단순한 구매·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 4 조 위탁 또는 수탁대상 업무의 범위

- 4.1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 3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 3 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4.2 조를 적용한다.

4.1.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무 중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4.1.2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4.1.3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4.1.4 금융투자업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5 조에서 업무위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2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제 2 호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코스콤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에 원장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2.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4.2.2 최근 3 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

4.2.3 기타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제 5 조 업무위수탁시 검토사항

- 5.1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제 3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또는 제 3 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5.1.1 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 및 편익분석
 - 5.1.2 금융이용자 또는 투자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 5.1.3 제 3 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위탁 또는 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 5.1.4 제 3 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5.1.5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 저촉여부
 - 5.1.6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 5.1.7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 5.1.8 자본시장법 제 44 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 등
 - 5.1.9 정보처리 위탁의 경우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최근 3 년 이내 금융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 2 회 이상 받은 경우
- 5.2 본 기준에 따른 업무의 위수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소관부서등은 제 5.1 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준법감시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 6 조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해당 업무를 위·수탁함에 있어서는, 위수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별로 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사전에 그 관리대책을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6.1 비용 및 편익분석 -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제 3 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시설 및 업무경험을 비교하여 비용(기회비용포함)의 감소 및/또는 편익증대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6.2 제 3 자의 업무위수탁 적격분석 - 제 3 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 위탁 또는 수탁을 할 수 있는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위탁의 경우 제 3 자의 재무상태, 전문인력, 시설의 보유현황 및 업무처리 실적 등에 비추어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 6.3 업무위수탁의 당사자들에 대한 영향분석 - 업무위수탁으로 인하여 당지점이나 제 3 자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한다.
- 6.4 업무위수탁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 업무위수탁으로 인하여 고객 등 금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건전한 금융질서가 문란하게 될 우려는 없는지 판단한다.
- 6.5 정보의 보안성 및 기타 법령 적합성 분석 - 업무위수탁으로 인하여 고객 등 금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건전한 금융질서가 문란하게 될 가능성 여부,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을 저촉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판단한다.
- 6.6 비상계획 분석 - 어느 당사자의 부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업무중단, 통신 등의 장애로 인한 지시와 보고의 중단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판단한다.

제 7 조 위수탁 계약의 결정, 해지 및 재위탁

7.1 해당 부서장이 제 3 자와의 업무위수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점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내지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 내 위원회(이하 “지점장 등”)에게 그 체결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업무위수탁계약의 체결은 최종적으로 지점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점, 지점 또는 계열사 사이의 업무위수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결정하고 지점장에게 보고한다.

7.2 제 3 자와의 업무위수탁계약의 체결승인을 신청하는 부서장은 지점장 등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서 초안, 제 5 조에서 정하는 검토내용, 제 6 조에서 규정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그 분석 및 관리대책에 관한 내용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3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위수탁업무와 관련한 제 3 자와의 업무위수탁계약의 해지는 지점장 등의 결정으로 한다. 단, 업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해지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점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3.1 계약 해지 후 위탁대상 용역 또는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3.2 계약 해지 후 이해상충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3.3 계약 해지 후 분쟁 방지 및 해결에 관한 사항

7.4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위탁한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원수탁자가 제 3 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7.4.1 원수탁자가 본점, 다른 지점 또는 계열사가 아닌 경우, 원수탁자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재위탁하기 전에 서면으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수탁자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제 8 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게 미리 서면으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원위탁계약 체결시점에 재위탁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7.4.2 제 7.4.1 조에 따른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승인은 지점장 등이 결정한다.

7.4.3 원수탁자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본점, 다른 지점 또는 계열사인 경우, 원수탁자는 제 8 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재위탁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원위탁계약 체결시점에 재위탁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7.4.4 제 7.4.3 조에 따라 원수탁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준법감시인 및 법무팀은 재위탁계약이 한국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원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5 위 7.4 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 4.2 조, 제 13.2 조, 제 10.2 조, 제 10.3 조, 제 8 조, 제 12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원수탁자, 수탁자는 채수탁자로 본다.

7.6 제 3 자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재위탁은 업무위수탁계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점장 등의 결정에 따른다.

제 8 조 보고의무

8.1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 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1.1 위탁계약서(안) 사본

8.1.2 본 업무위수탁 기준

8.1.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8.1.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8.1.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8.1.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1.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 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인적사항 등)

8.1.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8.2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 받는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7 영업일 이전에 제 8.1 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3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제 8.1 조 및 제 8.2 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제 8.1 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4 제 8.1 조 내지 제 8.3 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반기 현황을 해당 연도 7월말 또는 이듬해 1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협회 등이 회원 금융회사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8.4.1 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8.4.1.1 해당 금융회사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상대방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8.4.1.2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8.4.2 금융거래정보 이외의 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 9 조 위탁업무의 모니터링

해당 업무를 위탁한 부서장은 위탁업무가 개시한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의 재무상태 및 리스크, 비상계획 및 그 테스트 결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절차 및 담당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원칙적으로 [1년에 1회]로 하되, 위탁으로 이전되는 정보의 종류, 수탁자 등 개별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모니터링(수탁자의 자체 모니터

링 결과에 대한 보고서 내지 확인서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중요한 리스크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본점, 다른 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0 조 고객정보의 보호

10.1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본점, 다른 지점 또는 계열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준하는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위탁계약서에 포함되면 된다.

10.1.1 수탁자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고객자료를 수탁자의 고객자료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0.1.2 수탁자는 인가된 자에게만 고객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10.1.1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전받은 정보를 당초 위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0.1.2 수탁자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영업상의 비밀, 고객정보, 기타 회사와 관련된 정보 등을 수탁업무 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1.2.1 문서보안, 시설보안(서랍 시건장치, 복사기, 팩스, 프

린터 정리 등), 전산보안 등 각종자료에 대한 보안 점검

10.1.2.2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10.1.3 수탁자는 위와 같은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체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 내지 확인서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정기적으로(원칙적으로 [1년에 1회])로 하되, 위탁으로 이전되는 정보의 종류, 수탁자 등 개별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행 지점의 본점, 다른 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을 생략할 수 있다.

10.1.4 만약 수탁자가 위와 같은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고객정보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

10.2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제 10.1.3 조에 따라 수탁자의 고객정보 보호 관련 자체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 내지 확인서를 징구하여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0.3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위탁 처리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10.4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음에 있어서, 수탁업무와 관련한 고객자료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고객자료와 별도로 관리되도록 하고, 인가된 직원 외에는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전받은 정보를 당초 위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동意的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비상계획

11.1 업무위수탁계약의 체결 전에 수탁자의 부도 또는 통신문제의 발생 등을 포함한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11.2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11.1 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업무프로세스 및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수탁자는 비상사태의 해결 및 비상계획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접근권 및 검사권 확보

12.1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위탁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의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 및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감사인 또는 외부감사인이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수탁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직접 또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을 통하여) 응할 의무를 위수탁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

13.1 업무위수탁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당 부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1 위수탁업무의 범위 (공급주기, 내용, 형태 등)

13.1.2 업무수행의 수단

13.1.3 정보제공 책임 (수탁자 내부의 영업상 중요정보 포함)

13.1.4 수탁자에 대한 감사 권한

13.1.5 업무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금

13.1.6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과 물적 설비 및 지적재산권의 이용조건

13.1.7 고객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0.1 조 각 호의 내용 포함)

13.1.8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

13.1.9 면책조항, 보험가입, 분쟁해결 (중재, 조정 등) 방법

13.1.10 수탁자의 책임한계

13.1.11 계약의 파기 또는 종료(계약해지권, 자료의 복구방법 등)에 관한 규정

13.1.12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13.1.13 수탁자가 업무 재위탁시 원계약 준수 명시

13.1.14 준거법 및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업무위수탁

상대방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13.1.15 기타 업무위수탁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2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14.1 조의 내용에 추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처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3.2.1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13.2.2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제 14 조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14.1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업무위수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 불만을 접수 받은 직원은 즉시 해당 업무의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담당 부서장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단, 대규모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과 같이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이 지점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14.2 피해자의 불만 제기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준법감시인은 해당 불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법규 및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은 피해사실 및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방안을 수립하고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지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의 결정은 지점장이 한다.

제 15 조 업무위수탁기준의 제정 및 개정

15.1 본 업무위수탁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점 내 경영위원회(OPCO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금융감독원이 지점에 대한 검사결과로 본 업무위수탁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경우에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이를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관련규정의 준용**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업무위수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의 법규 및 본점에서 정한 지침에 따르며, 상충시에는 국내법규가 우선한다.